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동문회 규약

2023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OB(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교 출신 졸업생들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아래의 3가지를 주 목적으로 한다.

첫째,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둘째, 회원의 경사 및 조사 후원

셋째, 기타 총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식적으로 의결된 사안 처리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조(회원) 본회는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생을 회원으로 한다.

제4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휴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생 중 당해 회기(1년) 회비 납부(연납 혹은 월납)를 한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생 중 당해 회기(1년) 등록비를 납부하고 월 회비는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3. 휴면 회원은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생 중 당해 회기(1년) 등록비를 납부 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과 선출)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명의 감사를 둔다.
2. 회장, 부회장은 투표로 선출하고, 단독후보 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회장의 요구 시 투표로 선출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미리 알려 후보에서 제외한다)
4. 투표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기본 1년으로 하며, 투표를 통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기 종료 전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대 3년 재임)
7. 본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한하며, 운영자금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8.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필요하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9. 총회는 사업계획 및 결산 결과 처리, 임원 선출, 친목회 규정 개정,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10. 정기 총회는 대면이 원칙이나 비대면(Zoom)으로도 실시 가능하다.
1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제 2 장 (운영)

1. 본회의 운영비(회비)는 각 회원 당 매월 1만원을 적립하며, 행사 진행 등으로 인해 부족 시에는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부득이하게 경제적 사정이 있는 회원의 경우 임원진의 협의 하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1만원 이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구직 활동 중이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3. 신규 가입하는 회원 중 경조사 항목(제3장 참고)을 이미 충족한 회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비 징수를 면제한다. (가입 전 해당 내용 공지 후 희망자에 한하여 징수 면제)
*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30일 이내인 자를 말함.

- 1) 기혼자 - 첫 10개월 회비 면제 (총 100,000원)
- 2) 기 출산자 - 첫 5개월 회비 면제 (총 50,000원)
*자녀가 다수일 경우 자녀 인원수(N)에 따라 면제 기간이 증가함. (x N)
- 3) 배우자상 - 첫 10개월 회비 면제 (총 100,000원)
- 4) 부모상 - 첫 10개월 회비 면제 (총 100,000원)
- 5) 배우자의 부모상 - 첫 10개월 회비 면제 (총 100,000원)
* 신규 가입 회원이 1) ~ 5)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회비 면제 기간을 정한다.
4.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상호 부조를 위하여 제 3장에서 규정한 찬조금(축의금 및 조의금)을 지급한다.
5. 회원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통원기간 제외, 입원 일수 15일 이상)를 할 때는, 정도에 따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로금을 지급(10만원)할 수 있다.
6. 교통비는 동문회 대표 자격으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인당 관내(서울, 경기, 인천)2만원, 관외(그 외) 4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사에 참석하는 동문회 대표단(최대 2인)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7. 급한 경조사 발생하였을 때 회장단은 10만원까지 회비를 쓸 수 있으며, 반드시 사후 승인을 받고 정산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고한다.(Ex. 회원의 가족 구성원 사망 등)
8. 본회의 회기 중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전 회원의 친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회원들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회비는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9. 본회에서는 1회기(1년)에 1번 인천대 체육교육과 동문의 밤(가칭, 8월 중 개최 예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본 행사는 정기 행사이므로 회원 수의 30% 이상 참석 시 회비로
행사 비용을 지출한다.

* 만약 졸업생 중 동문회 회원이 아닌 인원이 해당 행사에 참여할 경우, 임원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정 금액의 기여금(참가비)을 징수한다.

10. 본회에서는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스승의 날 행사(졸업생 & 교수님 모임)에 일정 금
액 찬조한다. 금액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행사 미개최 시 금액 찬조는 하지 않는다.

11. 운영비 관리는 총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회장이 관리 운영한다.

12. 회기(1년) 지출금 잔액은 중도 탈퇴회원을 제외한 회원에게 다음 회기(1년) 최소 이월
금 1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1/N)한다.

** 2023 개정 : 회기 잔액은 전액 다음 회기로 이월하며 연말 환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3장 (상조 내역 및 지출)

구 분	내 용	지출액	비 고
경사	※ 본인 결혼 ※ 자녀 출산	100,000 50,000	※ 지급 범위 내에서 화환 혹은 축의금
조사	※ 본인상 ※ (직계) 가족상 ※ 배우자상 ※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상	300,000 100,000 100,000 100,000	※ 지급 범위 내에서 조화 혹은 조의금
위로금	<p>회원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 (통원기간 제외, 입원 일수 15일 이상)를 할 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u>위로금을 지급(10만원)</u>할 수 있다.</p>		

● 기타 경조사는 향후 운영 안정이 되면 항목 추가 또는 삭제 회의 진행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의 변경은 임원진 협의를 통해 가안을 작성한 후,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